

國道 17號線(清州~新灘津)擴・鋪裝에 따른
交通安全對策建議(案)

建設委員會

目 次

1. 交通安全對策	712
1) 一般對策	712
2) 主要마을里 安全對策	713
2. 施設別 安全對策	715
1) 交通信號機	715
2) 交通安全標識	715
3) 路面表示	716
4) 道路案內表式	716
5) 道路附屬施設	716
3. 交通安全施設設置 基準補完	717

國道 17號線 (清州~新鬱鎮間) 交通安全對策(案)

1. 交通安全對策

1) 一般對策

- 工事期間中 工事區間に 危險標識 및 注意標識를 設置하고 기완료구간의 적극적인 安全對策 강구.
- 공사구간에 대해 운전자가 事前 認知 대비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 교통사고 다발지점 및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지역에 교통경찰관 및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과속 및 추월 방지.
- 마을과 마을의 거리가 인접해 있고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農業에 종사하고 있으며 도로와 인접하여 學校(국민학교 3. 중학교 1. 고등학교(신축중)1)가 있어 歩行者와 자전거 또는 경운기가 안전하게 步行 및 運行될 수 있는 人道 및 農路가 차도와 구분, 설치되어야 함.
- 도로를 境界로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곳의 신호등(보턴식 및 주기식), 횡단보도(지하도 포함) 또는 點滅燈 설치.
- 高速道路 1호선의 밑을 관통하는 지하도와 확포장되는 도로와 연결되는 청주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운행되는 車輛의 左回轉 및 人馬의 地下道 利用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이용이 많은 우록리 등에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이용이 적은곳에서는 점멸등 및 좌우회전 허용표지를 설치.
- 下位道路와 連結되는 삼거리에는 운전자의 시계확보 및 이지역에서의 서행유도를 위한 교통표지 및 점멸등을 설치하고 아울러 方向豫告標識 및 方向標識를 竝行設置.

- 도로의 확·포장 공사담당기관(건설부 국토관리청: 도로확장 및 개보수「고속도로, 국도」, 도로관리장비 및 도로표지, 증기의 안전관리)과 도로의 유지 및 교통소통담당 기관(관할 경찰국: 운전면허 및 교육, 안전표지 및 신호시설, 운전자 및 보행자 지도 단속)의 2원화된 도로공사 및 교통관리체계를 건설부로 일원화하여야 함(내무부 관할의 안전표지 및 신호시설 설치부문을 건설부로 이관하여야 함).
- 도로의 확·포장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 또는 교통전문가에 의한 사고가능지역에 사고방지시설을 의무화하여야 함.
- 농가가 산재하고 있는 도로에서는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구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農路 景人道 및 地下道(최소폭 4m)를 필수적으로 설치함.
- 기타의 구간에서도 최소한 자전거와 리어카, 경운기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인도를 차도와 구분하여 설치함.

2) 主要 마을별 安全對策

· 양촌리

양촌교 입구 (첨멸등, 최고속도제한)

삽작골삼거리 (좌우회전 차선 및 신호등 2곳설치)

양지편 앞 (노면요철, 첨멸등설치, 인도확보)

· 가좌리

대추말 (노면요철, 첨멸등설치)

아랫말-건너말(지하도 설치)

상점말입구(좌우회전 차선, 첨멸등설치)

· 수대리

앞집거리 (횡단보도, 첨멸등)

· 척산리

척산삼거리(신호등설치)

동편말입구(좌우회전차선, 신호등설치)

남이면사무소(마을양측입구 노면요철, 신호등, 횡단보도설치)

· 외천리

안골3거리(신호등, 좌우회전차선설치)

담안-진바위(지하도설치)

양지말(외천국민학교)-음지말(지하도설치)

창말(노면요철, 신호등, 횡단보도설치)

외천 IC (신호등, 횡단보도설치)

석수정앞(최고속도제한, 좌우회전 차선, 점멸등설치)

· 우륵리

불목이(××고등학교 건축중)입구 지하도 앞(신호등, 좌우회전 차선, 횡단보도
설치)

갈골입구 지하도 앞 (횡단보도, 점멸등, 최고속도 제한)

· 죽전리

선동교앞(신호등, 횡단보도, 최고속도제한)

현도면사무소앞 현도중학교(신호등, 횡단보도, 視界確保)

· 매봉리

현도국교-새터말(지하도 2곳설치)

※ 기타 道路交通法, 交通安全法, 交通安全施行規則 등에 의거하고 다음의 전반적인
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임.

2. 施設別 安全對策

1) 交通信號機

- 交通信號機設置 및 運營상의 문제점으로 施設基準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5조에서는 신호등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4.5 - 5.0m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호기 설치지점의 地理的 條件이나 運轉者나 步行者의 視認性 등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交叉路 건너편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원칙은 준수하되 視認性提高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차로 전방에 主信號機와 같은 週期로 작동되는 步調信號機를 설치하여 교차로 운행의 效率性과 交通安全性을 높여야 함.
- 그리고 교차로 형태나 운행량을 감안한 신호기 설치유형 등에 관한 입법적 보완도 필요함.

2) 交通安全標識

- 교통안전표지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표지판의 크기를 필요에 따라 확장·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표준치수로만 설치하고 있어 폭이 넓은 도로의 경우 표지판이 상대적으로 잘 눈에 띄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交通 및 經濟社會的 與件의 變化에 따라 새로운 交通安全標識의 種類도 多樣化 시킬 必要가 있음.

※ 非常時나 각종 도로공사 등에 대비하여 별도의 緊急標識을 補強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작 및 설치기준이 신설되어야 함.

3) 路面標示

- 道路標示에 관한 現行 規程은 路面標示의 각 구성요소를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實務者가 이 規定을 도로상에 적용하려면 이 요소들을 종합하여 도로면 위에 나타내고자 할 때 부분적인 요소가 강조되고 전체적인 균형을 잃게됨.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交叉點 및 單一路의 路面標示 標準形을 제시하는 실무편람의 내용 확대가 필요함.
- 따라서 通行方法規制 路面標示나 進行方向標示 등은 事前豫告的 意味傳達에 重點을 두어 해당 地點到達까지 충분한 거리를 두고 反復設置되어야 함.

4) 道路案内標識

- 현행 道路案内標紙中 方向標識(方向豫告標識 포함)등은 거의 交叉點附近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에게 미리 車線方向을 결정하게 해 주는 事前情報提供機能이 不足한 실정임.
- 방향표지가 교차점 전방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事故誘發可能性이 있으므로 이의 改善이 要請되고 있음.
- 운전자에게 충분한 안내를 위해서는 經路를 따라 표지판을 되풀이해서 複數個를 설치해야 하나 高速道路를 제외하고는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아 이의 보완이 필요함.

5) 道路附屬施設

- 道路管理者가 설치하는 . 防護網, 視線誘導表示, 衝擊吸收施設 등 도로부속시설의 경우 시설물의 규격기준은 「道路安全施設 設置便覽」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로의 曲線半徑, 勾配 등에 따른 설치의무규정이 없어 노면포장만 하고 아무런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廉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보완이 필요함.
- 우리나라 道路照明施設은 주로 도시간선도로 도심부나 고속도로 톤게이트부근에 집중되어 照明施設以外 地域으로 갑자기 進入할 경우 瞬間的인 視覺障礙를 일으켜 交

交通事故의 危險이 큼, 따라서 人體特性과 道路特性, 照明施設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 上級道路와 下級道路가 接續되는 곳의 많은 주의가 요청됨. 하급도로에서 진입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視界確保가 필요함. 또한 충분한 視距의 確保 및 교통 안내표지판의 설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3. 交通安全施設 設置基準의 補完

※ 耕耘機, 自轉車 등의 夜光後輩反射機 設置 義務化

- 우리나라에는 車對車事故에 의한 사망자 중 25.1%가 추돌사고에 의한 사망자이며 그중 주·정차차량에의 야간 추돌사고 死亡者가 73.6%를 차지하고 있음.
- 夜間 駐·停車車輛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도로변에 주·정차시킨 차량의 야간 視認性이 불량하기 때문이며, 특히 대형화물차, 경운기, 자전거 등에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야간 주·정차차량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自動車, 耕耘機, 自轉車 등의 後部에 夜光反射機 設置를 義務化함.
- 현행 自動車 安全基準은 후부반사기의 面積만 規定하고 個數는 規定하고 있지 않으므로 후부반사기 개수는 소형자동차는 2개이상, 대형자동차는 4개이상 설치하도록 함.
- 反射機의 反射光은 현행 100m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비춘 경우 識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後方 150m의 거리로 확대함.
- 耕耘機, 自轉車 등 自動車以外의 道路上을 운행하는 모든 車馬는 반드시 後部反射機를 설치하도록 製作基準을 明示하고 未附着車馬에 대한 國家根據를 「道路交通法」에 마련함.